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03
----------	-------

발의연월일 : 2025. 6. 26.

발 의 자 : 이달희 · 김소희 · 김상훈
고동진 · 김은혜 · 최보운
김정재 · 이성권 · 강선영
최은석 · 김용태 · 박준태
윤영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사무를 위하여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미흡하게 하여 잘못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는 범죠행위까지 발생한 바 있음.

투표관리관 등 투·개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공명정대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선거와 관련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때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4항 신설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수당”을 “수당, 교육”으로 한다.

- 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한 때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여야 한다”를 “위촉하여야 하며, 투표사무원에 관하여는 제146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74조제2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개표사무원에 관하여는 제146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 투표관리관) ① ~ ③ (생략)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 투표관리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u> <u>는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u> <u>리관을 위촉한 때에는 직무 수</u> <u>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u> <u>야 한다.</u>
④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 리관의 위촉 및 해촉, <u>수당</u>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⑤ ----- ----- <u>수당, 교</u> <u>육</u> ----- -----.
第147條(投票所の 設置) ① ~ ⑧ (생략)	第147條(投票所の 設置)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 사무원을 <u>위촉하여야 한다.</u>	⑨ ----- ----- ----- ----- ----- <u>위촉하여야 하며, 투표</u> <u>사무원에 관하여는 제146조의2</u> <u>제4항을 준용한다.</u>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⑩ · ⑪ (생략)	⑩ · ⑪ (현행과 같음)

第174條(開票事務員) ① (생략)	第174條(開票事務員) ① (현행과 같음)
② 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② ----- ----- ----- -----위촉하며, 개표사무원에 관하여는 제146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